

경운대학교 대학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는 제반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운대학교 대학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의 '구성원'이라 함은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졸업생, 지역주민, 산학협력 관련 기업체를 포함 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구성단위의 정원과 구성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: 교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3명(교수, 부교수, 조교수 각 1명)으로 구성한다.
2. 직원 : 직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3명(과장, 계장 또는 주임, 일반직원 각 1명)으로 구성한다.
3. 학생 :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.
4. 총장은 필요에 따라 졸업생, 지역주민, 산업체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구성원 참여 및 소통 활동의 기본 방침 및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
2. 대학 운영에 관한 구성원 참여 의견수렴(간담회, 설명회)
3. 대학 운영에 관한 구성원 참여 건의 및 제안
4. 대학 운영에 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 관련 정례회의
5. 대학 운영에 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기타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,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되, 매 학년도 1회 이상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 다만, 심의 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회의결과의 환류) 위원회는 건의 및 제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안건별로 주관부서에 전달하며, 주관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직원위원 중에서 총장

이 임명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